

 신안산대학교	CCTV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번호	2-1-15
		제정 일자	2011.10.24.
		개정 일자	2020.09.24
		책임부서/팀·계	사무처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이하“본 대학이라 한다) 에서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개인의(화상정보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이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이 수신 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이하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한다.

2.“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정보주체”라 함은 당해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가능한 자연인을 말한다.

4.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폐쇄적인 유무선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정보 전송 등의 처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5. "CCTV 통합관리"라 함은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 또는 구역별 CCTV를 물리적 또는 관리상 통합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담당부서 및 담당자) ① CCTV의 설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 업무는 사무처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 다만, CCTV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은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CCTV의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해당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2021.8.20.>

② 사무처 시설관리팀 및 CCTV의 설치·운영을 위임 받은 해당 기관(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CCTV의 설치· 운영 및 CCTV 관련 사무를 전담할 담당자를 둔다. <개정 2020.9.24., 2021.8.20.>

③ CCTV의 설치·운영을 위임 받은 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접수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사무처 시설관리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2021.8.20.>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4조(사전의견수렴) CCTV 담당부서에서는 CCTV 설치시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 담당부서에서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6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가 특정된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보호조치 등) ① CCTV 담당부서에서는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CCTV 담당부서에서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CCTV 담당부서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 전송 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CCTV 담당부서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서식1)

② CCTV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CTV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3.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0조(보유기간 및 삭제) 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30일 이내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 의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CCTV 담당부서에서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의견수렴) ① CCTV 담당부서에서는 CCTV를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부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CCTV 담당부서에서는 CCTV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진 후에 추가 CCTV를 설치하려는 경우 통합관리 사실을 제4조의 사전 의견수렴시 알려야 한다.

제13조(통합관리시 보호조치) ① CCTV 담당부서에서는 CCTV를 통합관리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CCTV 담당부서에서는 모니터링 수행 인력을 선발하는 경우 제13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CCTV 담당부서에서는 통합 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 정보로의 접근권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CCTV 담당부서에서는 통합 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 정보에대한 접근 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위탁 시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CCTV 담당부서에서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CCTV 화상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

기관명(소속)

성 명

사 번(학번)

전화번호

전 화 :

E-mail :

휴대폰 :

정보열람 및 제공 요청 일시

20 년 월 일(시 분) ~
20 년 월 일(시 분)

장 소 :

열람 및 제공 :

사 유 :

※ 유의사항

1. CCTV 촬영시간 ,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15일입니다.
2.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 시 정보보호관리법에 저촉됩니다.